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 강화

전북도선관위, 3일부터 지자체장 행위 제한 · 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지자체 · 공공기관 · 정당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해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공공기관 장애인 능력 · 근무여건 고려 일자리 창출 제도적 근거 마련

국주영은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시 능력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공공부분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무 현황을 파악하고 능력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매년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고용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이를 권고·공표하도록 개정했으며,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능력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수흥 의원, 민주당 선정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세정, 금융, 통화량, 물가 등을 관장하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현상 등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의 시급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 반영에 집중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통과, ▲법인세 공제감면의 수도권 편중 개선, ▲지방에 대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 도입 등을 강조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의 수출입 물량이 전국대비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경제력지수에서 전북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 등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사항 120건(기획재정부 44건, 국세청 19건, 관세청 11건, 조달청 10건, 통계청 8건, 한국은행 11건, 한국수출입은행 4건, 한국투자공사 4건, 한국조폐공사 3건, 한국재정정보원 3건, 국제원산지정보원 3건)을 발굴·제시하면서 정책과 민생을 충분히 살핀 국감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호상 기자

'군산의료원 정상화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군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전라북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원봉사 한 만큼 현금처럼 쓰자

전북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오늘부터 시행

공공시설물 50곳, 같이상점 150여곳 등서 사용 가능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 차원의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를 통합·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해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도와 시.군 공공시설물 52개소, 150여 곳의 '같이상점',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1365VIP 플랫폼(문화통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전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119안전체험관, 도립미술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종합사격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 등 6곳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순차적으로 개정돼 올해에 52곳 공공시설물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졌고, 내년에는 3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전북도 자원봉사자증 앞면(사진 위)과 뒷면.

150여곳의 '같이상점'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이상점'은 자원봉사센터와 가맹협약을 맺고, 전북도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점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조경 및 화훼, 미용실, 병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연 및 전시 관람 입장권, 크리에이터 창작물 구입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이 개발한 '1365VIP 플랫폼' 시스템을 연계,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서비스)과의 결합이 가능해져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게됐다.

전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앞서 시행한 타 광역 시도의 마일리지제와 달리 도내 자원봉사자 누구에게나 차별 없고 공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광호 이사장은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합하기까지 행정과 자원봉사센터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며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순환생태계 조성과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증 최초 발급은 12월 1일부터 도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되며, 신청일 기준 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기존 시·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은 교체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대상자는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jbvdo.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기자

행안부, 지자체에 특교세 150억원 지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 15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더 커진 지자체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특교세는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관리, 의료대응체계 확충,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등에 쓰이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가 특별방역대책 현장에서 신속하게 쓰여 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내 LED제품 생산 소상공인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위해

나인권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할 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해 이 규정을 개정, LED제품 생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전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역외기업의 과도한 거래제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차별 논란이 있는 경쟁제한을 통한 육성이 아닌, 도내 기업이 역외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도내LED산업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재택치료 동거인도 외출 제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로 20일간 출근 등 불가

정부 "출근 금지 못 받아들이면 생활치료센터 전환 조정 중"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출근과 등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팀장은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에 대해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